

<별표 1> : 삭제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1. 제출서류 검토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라 한다)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과제의 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정부지원연구개발과제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부 연구개발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제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구 분	사 전 지 원 제 외	사 후 관 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가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u>민사집행법</u>」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가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u>3개</u>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u>외국인투자 촉진법</u>」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u>지역요령</u>」 제2조제1항 제10호의6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미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u>한국벤처캐피탈협회</u>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M)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u>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u>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u>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재결산 자료 제출 가능</u>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u>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u>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 의견이 “한정”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재결산 자료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신규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u>연구개발기관이</u>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u>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u>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수행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요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지역요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⑨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⑪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별표 3>

선정평가 감점기준

사업 구분	감 점 기 준
공통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감점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별표 4>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연 번	서류명		당사자	사업 신청	사업 협약
1	협약체결 요청공문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협약서		· 산업부/지자체/주관연구개발기관 (국비가 보조금 및 지자체연구소육성 사업인 경우)		○
			·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관 또 는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국비가 출연금인 경우)		○
3	첨부서류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	○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	○
5		법인인감증명서	· 연구개발기관		○
6		사용인감증명서	· 연구개발기관		○
7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 확약서	· 지자체	○	○
8		기관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연구개발기관	○	○
9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	○	○
10		전용공간 확보계획 서	· 연구개발기관	○	○
11		연구비통합관리시스 템 관련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등 영리기관만 해당(제출 서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출금금지동의서, 부도정보제 공동의서)		○
12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		○
13		위임장	· 주관연구개발기관		○
14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별표 5>

협약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제29조제5항 관련)

변경내용	제출서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책임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연구책임자의 회원 가입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관 변경에 대한 각 연구개발기관의 동의서 ※제출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 정보 입력필수 ※기술료납부의무의 양도가 불가한 경우 기술료 납부확약서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전용공간 외의 장소에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구개발기간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공문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최초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단계정산의 경우 연구개발비 이월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 총액 범위에서 해당연도 연구수당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해당 단계 간접비 총액 증액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기반조성사업의 장비 또는 에너지기술 실증사업의 실증설비를 전용공간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변경 신청시 제출서류를 조정할 수 있음

<별표 6> 연구개발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구분	내 용	출연금 인정기준	
		非예타	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70% 상한	50% 상한
	[장비운영비] •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 장비운영·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운영, 기술상담·자문·지도 등)	70% 상한	50% 상한
R&D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50% 상한

※ 상기 출연금 인정기준은 시설·장비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이외의 사업은 산업기술혁신 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을 따른다.